

긴급복지지원제도가 무엇인가요?

갑작스러운 주소득자의 사망,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·의료·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

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?

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



위기사유

- 주소득자의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급시설 수용 등으로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
 -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 - 가구원으로부터 방임·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
 -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
 -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·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
 -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*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*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, 단전 1개월 경과시

소득·재산기준

- 소 득 : 최저생계비 150%이하 (단,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이하)
- 재산기준 : 대도시 1억3,500만원, 중소도시 8,500만원, 농어촌 7,250만원
- 금융재산 : 300만원 이하

*선지원 후처리를 원칙으로 현장확인 후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지원

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로 연락주세요.

- 시·군·구청 및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
- 보건복지콜센터 : 국번없이 129 (www.129.go.kr)

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?

종류	지원내용	지원금액	최장횟수	
금전·현물 지원	생계지원	• 식료품비,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	최고 97만원 (4인기준)	6회
	의료지원	• 각종 검사,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- 300만원 이내(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)	300만원 이내	2회
	주거지원	• 국가·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- 원칙적으로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급	35만원 (중소도시, 4인기준)	6회
	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	•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-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	120만원 (4인기준)	6회
	교육지원	• 초·중·고등학생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지원	초 18만4천원, 중 29만3천원, 고 35만9천원 및 수업료·입학금	2회
그 밖의 지원	•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중 다음의 경우에 지원 - 동절기(10~3월) 연료비 : 7만4천원 - 해산비·장제비·전기요금 : 50만원(1회) * 전기요금은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(소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)		1회 (연료비 6회)	
민간기관·단체 연계지원 등	• 사회복지공동모금회,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• 상담 등 기타 지원		횟수제한 없음	

* 필요시 가구별 위기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요사업 안내서비스 실시

긴급지원 흐름도



* 부정수급... 양심을 속이는 행위입니다.

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적정성 심사에서 확인되면 지원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 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,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